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5.1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6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5월 14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건설관리과장 이선희

가. 제안이유

「도로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간 일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「도로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
- 2) 조례에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정비
 - 구두수선대 등 「도로법 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을 삭제
- 3)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정비
 -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별표 3을 따르도록 함
- 4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상수)

본 개정 조례안은 「도로법」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변경 하고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 상위법인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9조의2, 안 제10조, 안 제9조의2 관련 별표2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,

안 제2조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 중 상위법인 「도로법 시행령」에 동일하게 중복 규정되어 있는 허가 대상 시설물 조항은 삭제를 하였으며, 안 제3조에서 점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별표1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9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음.

또한, 안 제3조 관련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「도로법 시행령」의 별표3과 동일하게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 시행령과 다르거나 추가적으로 정한 사항만 존치한 바,

이는 「도로법 시행령」에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 규정함으로써 상위법 개정과 조례의 개정일이 달라 적용 시점 차이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.

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